

2021년 4월 5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기자재정책팀 팀 장 이종태(044-201-1891), 사무관 김남진(1840) / 제공일: 4월 5일(총 2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을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 중임 [농민신문 4.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]

-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을 규제영향분석서 작성·심사, 입법예고,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중에 있습니다.
- 4월 5일 농민신문 <[취재수첩] 뒤끝이 개운치 않은 타이밍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

언론 보도내용

- ‘「규제영향분석서」에는 입법예고일이 1.25~3.8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입법예고는 3.16~4.26일까지 되어 있어, 업계 편의를 고려해 입법예고 시점을 두 달 가까이 미뤘다는 뒷말이 있음’



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

- 입법예고시 첨부되는 규제영향분석서는 KDI·KREI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확정되므로 통상 2~3개월이 소요됩니다.
- ‘규제영향분석서’는 최초 작성시 임의로 입법예고 기간을 기재 하고, 규제영향분석서가 최종 확정되면 입법예고 날짜를 수정 합니다.

- 농기계 표시제도를 개선하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서는 1.12일부터 작성하여 KDI·KREI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3.23일 최종 확정되었으며, 빠른 개정작업을 위해 3.16일 입법예고 한 것입니다.
 - 다만, 입법예고시스템과 규제영향분석시스템은 별개로 운영되고 있어, 최종본 업로드가 자동으로 되지 않아 규제영향분석서의 입법예고 날짜를 수정하지 못한 오류가 있었으나, 업계 편의를 위해 미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.
 - 또한, ‘당초 일정(1월 입법예고)대로 라면 3월 상순에 시행규칙 개정령안이 공포될 수 있었다’는 보도내용은 국조실 규제심사, 법제처 개정안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어려운 일정입니다.
- * (시행규칙 개정절차) 입법예고(40일)→자체 규제심사(월1회)→국무조정실 규제심사(30일)→법제처심사(30일)→공포